

#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형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80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김형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규남,  
김기덕, 김용호, 김재진,  
김지향, 김태수, 김혜영,  
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 
송경택, 유만희, 윤기섭,  
윤종복, 이봉준, 이상욱,  
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  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,  
황철규 의원(25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홍보 소재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, 선정 배제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(안 제6조제3항).
- 나. 위원회 심의 시 홍보 소재 배제 사유 구체화(안 제12조제2항)

## 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#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소기업 및 소상공인, 비영리단체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12조제2항제1호 중 “홍보하는”을 “홍보하거나 비방하는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위원회 구성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이 경우 연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④ ~ ⑦ (생략)</p> <p>제12조(홍보 소재 선정 심의기준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심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및 단체가 응모한 소재는 배제하여야 한다.</p> <p>1.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<u>홍보</u>하는 기업 및 단체</p> <p>2.·3. (생략)</p>	<p>제6조(위원회 구성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소기업 및 소상공인, 비영리단체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</p> <p>3.·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 <p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홍보 소재 선정 심의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홍보하거나 비방하는</u>---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(소기업 및 소상공인, 비영리단체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)을 추가<sup>1)</sup>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주    병    준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    중    헌

추계분석관      손    제   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

1) [구성원 신분에 의한 재정소요 변동 검토] 회의 참석 시 민간위촉 위원은 참석수당(대면심의 1인 1회 150,000원)과 업무 추진경비(1인 30,000원)가 전부 지급되나 공무원 신분인 위원은 참석수당이 미지급 되므로 이를 주안점으로 두고 추가 비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

○ (검토내용) 해당규정은 위원회 총 정원 변동과 관련이 없고, 또한 현재까지 전부 민간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불 경우 위원 신분 변화에 의한 위원회 운영비용 변동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
※ 참고로 서울시 관련부서(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) 문의결과 현재까지 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됨을 확인함